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1두15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백정애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1. 6. 9. 선고 2011누530 판결
판 결 선 고 2011.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은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애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4항(이하 ‘중전 규정’이라 한다)과 같은 내용이다. 중전 규정에는 기존 장애와 관련하여 괄호 안에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규정에는 괄호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장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되었고, 그 시행령 역시 전부개정되면서 상위법에 ‘장애’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규정에서 중전 규정의 괄호 부분이 필요 없게 되어 삭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급여에 관한 내용은 거의 같아 중전 규정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한다’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취지 및 그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 중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애’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애 여부를 불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업무상 재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한 원고의 기존 장애를 기준으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으로 같은 부위의 장애 정도가 더 심해졌는지 여부, 즉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애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애의 장애등급이 기존

장해의 장해등급보다 중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한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직접적인 위임 규정의 형식과 내용 외에 해당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19. 선고 98두62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점(법 제1조), 법상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하나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은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법 제57조 제2항), 한편 장해급여의 공정한 보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개별 장해의 등급기준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복수의 장해가 있거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때의 처리기준이 그 대강으로 예측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은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업무상 재해로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장해보상을 한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기존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규 장해 사이의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장해가 없는 사람과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은 장해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나 업무상 재해로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과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게 기존 장해가 있는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사회보장급여의 하나인 산업재해보험급여의 기준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문제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측면 및 보험기술적 측면과 같은 제도 자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필요에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목적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그 방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_____

 대법관 박일환 _____

주 심 대법관 신영철 _____

 대법관 박병대 _____